



: 2017-11-16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16다227663 구상금
원고, 상고인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
피고, 피상고인 에이.피. 필러 머스크 에이에스
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5나66501 판결
판 결 선 고 2017. 10. 26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판단한다.

1.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

원심은,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화물운송장은 상법 제863조가 규정하는 해상화물운송장에 해당하고,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송하인은 판알피나 벨트트랜스포트(이하



'판알피나벨트'라고 한다) 또는 판테이너(홍콩) 리미티드(이하 '판테이너홍콩'이라고 한다)이고, 수하인은 판알피나 아이에이에프 코리아 또는 판테이너홍콩일 뿐 에스티엑스 엔진 주식회사(이하 '에스티엑스엔진'이라고 한다)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, 나아가 이 사건 화물운송장에는 수하인 변경에 관하여 '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'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판알피나벨트 또는 판테이너홍콩이 피고에게 서면으로 '수하인을 에스티엑스엔진으로 변경한다'는 통지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,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송하인 판알피나벨트가 에스티엑스엔진을 수하인으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운송계약상 수하인이 에스티엑스엔진으로 변경되었다고 본다면, 송하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운송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화물 인도 전에 일방적으로 수하인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, 이는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과 지시증권성을 배제함으로써 화물 인도 상대방에 관한 운송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해상화물운송장제도의 본질에 반하고, 서면통지를 통하여 변경된 수하인을 명확히 하려는 이 사건 화물운송장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이유로,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.

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효력, 화물운송장 약관의 해석, 대리행위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거나, 판례를 위반하거나,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.

2.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

원심은, 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운송인에게 귀책사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, 이 사건 화물운송장에 적용되는 피고의 운송약관에는 '운송인의 재량에 따라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



송할 수 있다'는 취지의 소위 '갑판적 자유약관'이 규정되어 있는 점, 이 사건 화물의 특성상 반드시 갑판이 아닌 선창 내에 적재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, 송하인 측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선창 내에 적재할 것을 특별히 지시하였거나 선창 내 적재를 전제로 한 추가운임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한 것 자체를 피고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, 이 사건 화물은 송하인 측에 의해 방수포로 완전히 포장된 상태에서 선적되었고,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'SHIPPER'S LOAD, STOWAGE, COUNT AND SEAL'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, 이 사건 화물이 훼손된 것은 방수포를 묶은 로프 일부가 끊어져 방수포가 벗겨짐으로써 운송 도중 빗물 등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데, 로프가 끊어진 것이 피고의 과실 때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, 이 사건 화물 훼손에 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.

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

.
: 2017-11-16

재판장 대법관 박정화

 대법관 김용덕

주 심 대법관 김 신

 대법관 박상옥